

社團法人 大韓建築學會 定款

(1974年 6月 12日 改正)

第1章 總 則

第1條 (名稱) 本會는 社團法人 大韓建築學會라 稱한다.

第2條 (目的) 本會는 建築에 관한 學問技術을 研究 鍊磨하여 建築技術者의 地位向上 相互間의 親睦을 圖謀하여 建築文化 發展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3條 (本部所在地) 本會는 本部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第4條 (支部設置) 本會는 理事會議 決議를 얻어 本部所在地 이외의 필요한 支部를 둘 수 있다.

第5條 (事業種目) 本會는 第2條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事業을 행한다.

- 一. 建築에 관한 調査 및 研究指導
- 二. 建築에 관한 圖書 기타 會誌 인쇄물의 刊行
- 三. 建築에 관한 講習會·講演會·懇談會·展覽會·見學會 등의 개최
- 四. 建築에 관한 計劃·鑑定·鑑督 및 技術檢討에 대한 國家 公共機關 기타의 회에 관한사항
- 五. 國內外 관계 諸學會와의 交流및 會議參席
- 六. 기타 本會目的達成에 필요한 事業

第2章 會員 및 會費

第6條 本會會員은 다음과 같이 5種으로 한다.

- 一. 正會員
- 二. 準會員
- 三. 學生 會員
- 四. 名譽 會員
- 五. 贊助 會員

第7條 (會員資格 및 入會) 各 會員의 資格은 다음과 같다.

- 一. 正會員: 正規大學 또는 舊制 專門學校에서 建築에 관한 學科를 專攻하고 이를 卒業한 자로써 實務經歷이 2년이상인자 또는 同等以上の 資格이 有한 者中 正會員 2명이상의 推薦이 있는자로써 理事會의 決議에 의하여 承認을 받은자
- 二. 準會員: 正規大學 또는 舊制 專門學校에서 建築에 관한 學科를 專攻하고

이를卒業한자 또는 建築事業에 關係를 가지고 상당한 經歷이 있는자중 正會員 2명 이상의 推薦이 있는 자로서 理事會의 承認을 받은자

三. 學生會員: 大學, 初級大學, 專門學校 建築工學과 在學生 또는 이에 준하는자중 正會員 2명 이상의 推薦이 있는 자로서 理事會의 承認을 받은자.

四. 名譽會員: 建築工學 및 이에 관련된 科學技術分野에서 學識 德望이 卓越한 자 또는 本學會發展에 크게 이바지한 자로서 理事會의 決議로서 推薦한자 名譽會員은 會員이 갖는 모든 特權을 享有하되 入會金 및 年會費를 免除한다.

五. 贊助會員: 建築에 관계있는 個人 또는 團體로서 本會의 目的을 贊助하는 자중 理事會의 決議로서 選定된 자

第8條 ①(會費) 會員은 會費를 納付하여야 한다. 一但 納付한 會費는 返環하지 않는다. 會員의 入會金과 會費는 理事會에서 定하되 正會員과 準會員의 會費比率는 正會員 2. 準會員 1로 한다.

② 本會 創設당시부터 正會員으로서 滿 65세에 달한 會員 및 35년 이상 會費를 納入한 會員은 이후 會費를 免除한다.

第9條 (除名) 本會 會員으로서 本會의 定款을 違反하거나 또는 本會의 名譽를 毀損시키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理事會의 決議로서 除名할 수 있다.

第10條 (資格停止 및 喪失) 本會會計年度內에 當年度 會費를 完納치 못한자는 理事會 決議로 會員資格의 停止處分을 할 수 있다. 資格停止 發効日 이후 滿 2년內에는 滯納會費의 納付와 同時에 會員資格이 復歸된다. 但 資格停止 發効日 이후 滿 2년이 經過한자는 理事會 決議로 除名할 수 있다.

第11條 (脫會) 本會 會員中 本會를 脫會코자 하는자는 會員辭退書를 本會事務局에 提出함으로서 脫會된다.

第3章 任員 職員 및 部署

第12條 ①(任員의 定員) 本會에 다음과 같은 任員을 둔다.

- | | |
|---------|----------------|
| 一. 會長 | 1名 |
| 二. 副會長 | 2名 |
| 三. 理事 | 33名(會長 副會長 포함) |
| 四. 參與理事 | 약간名 |
| 五. 監事 | 2名 |

②(任員의 性格) 각 任員은 名譽職으로 한다.

③(會長의 職務)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고 會務를 總括하며 總會 理事會의 議長이 된다.

④(副會長의 職務) 副會長은 會長을 補座하고 會長 有故時는 副會長中 年令 順에 의하여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⑤(理事 및 參與理事의 職務) 理事 및 參與理事는 理事會를 통하여 主要 會務의 議決에 參加한다.

⑥(監事の 職務) 監事は 會計事務를 監査하며 그 結果를 總會에 報告한다.

⑦(任員의 選任)

一. 會長, 副會長 參與理事 監事は 總會開催 1月前 別度の 選出委員會 規定에 따라 選出하고 總會 認准으로 推戴한다.

二. 理事는 會長團이 選出하여 會長이 委嘱한다.

但 理事의 반수(15명)적은 隔年으로 選出한다.

⑧(再選) 任員(參與理事 除外)은 再選될 수 있으나 會長은 重任하지 않는다.

⑨(任員의 任期) 參與理事는 終身 其他 任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缺員으로 補選된 理事의 任期는 먼저 任員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⑩ 任期가 滿了된 任員은 後任者가 就任할 때까지 그 職務를 擔當한다.

第13條 ①(名譽會長推戴) 前 會長中에서 功績이 顯著한 分을 總會에서 名譽會長으로 推戴한 수 있다.

②(參與理事 推戴) 本會 前任 任員으로서 本會의 發展에 功勞가 顯著한 分을 總會 決議로서 參與로 推戴할 수 있다.

③ 名譽會長은 모든 會議에 出席하여 議決에 參加할 수 있다.

第14條 (部署) 本會에 다음과 같은 部署를 둔다.

一. 總務部: 本會의 一般事務에 관한 事務 經理에 관한事項 支部監督에 관한事項 기타 他部에 속하지 않은 事項

二. 研究部: 學術 技藝의 研究調査에 관한 事項

三. 事業部: 啓蒙 宣傳 刊行 目的에 따른 諸事業에 관한 事項.

第15條 (事務局) 本會에 事務局을 두고 事務局內에 有給職員 약간名을 두되 理事會의 議決로 會長이 任命한다. 職員은 會長, 副會長, 各部長의 指導下에 事務를 分擔한다.

第4章 會 議

第16條 (會의의 種類) 本會 會議는 다음과 같은 2種으로 한다.

一. 總 會

二. 理 事 會

第17條 (總會) 總會는 定期 臨時的 2種으로 하고 會長이 이를 召集하되 7일이 전에 그 회의 目的事項을 提示하며 이를 通知한다.

第18條 (總會的 成立) 總會는 在籍會員 正會員의 1/10이상 出席으로 成立하고 會員은 自身 總會에 出席치 아니하면 會에 關與하거나 表缺을 할 수 없다.

第19條 ①(定期總會와 臨時總會의 召集) 定期總會는 每年 1회씩 4월중에 召集

한다.

臨時總會는 다음 경우에 會長이 이를 召集하여야 한다.

- 一. 理事會決議로서 要求할때
 - 二. 會員 1/20 이상의 連署로서 要求할때
 - 三.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 ②臨時總會를 要求할때는 理由를 書面으로 明示하여야 한다.
但 臨時總會 召集要求를 接受 하였을 때는 그 接受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召集하여야 한다.

第20條 (總會의 役割) 總會의 議決을 얻은 事項은 다음과 같다.

- 一. 任員의 認准
- 二. 事業計劃
- 三. 豫算 및 決算
- 四. 會則의 改廢 및 變更
- 五. 財産의 取得管理 및 處分
- 六. 기타 理事會에서 必要하다고 認定한 事項

第21條 (總會의 議題) 會長은 理事會의 承認을 거쳐 다음사항을 定期總會에 提出하여야 한다.

- 一. 前年度 收支決算 및 次年度 收支豫算
- 二. 前年度 末에 있어서의 財産目錄
- 三. 事業의 實績 및 計劃
- 四. 本會의 債權 및 債務

第22條 (總會議事) 總會의 議事は 出席正會員의 多數決로써 이를 決定하되 可
否同數일때는 議長이 이를 決定한다.

第23條 (理事會成立과 議決) 理事會는 理事 參與理事로서 構成하며 月 1回 이
상 會長이 召集하고 在籍理事의 2분의 1이상 出席으로 成立한다.
議決은 理事會에 參席한 理事 및 參與理事의 過半數로 決定한다.

第24條 (理事會의 役割) 理事會의 議決을 얻은 事項은 다음과 같다.

- 一. 諸規定의 制定 및 改廢에 관한 事項
- 二. 事業計劃의 決定 및 變更에 관한 事項
- 三. 會員의 除名 懲戒 및 權利行使의 停止에 관한事項
- 四. 本會 目的達成에 필요한 諸委員會의 設置에 관한 事項
- 五. 褒賞者 決定에 관한 事項
- 六. 總會에서 委任받은 事項
- 七. 기타 會長이 필요하다고 認定하는 重要事項

第5章 資産 및 會計

第25條 (資産의 構成) 本會의 資産은 다음 項目으로써 構成된다.

- 一. 會員이 納付한 入會金 및 會費
- 二. 贊助金과 贊助한 物件
- 三. 資産에서 생긴 收益
- 四. 기타의 收入

第26條 ①(基本資産) 本會에 基本資産을 둔다.

- 一. 基本資産으로 指定寄附된 贊助金 및 物件
- 二. 總會에서 基本資産으로 編入을 決議한 財産

②(基本資産의 助成) 基本資産을 助成하기 위하여 每年度 決算移越金の 1割 以上을 積立할 수 있다.

第27條 (通常資産) 基本資産 이외의 資産을 通常資産으로 한다.

第28條 (經費) 本會의 經費는 通常資産으로써 充當한다.

第29條 (資産의 管理) 基本資産의 管理方法은 理事會에서 정하고 本會의 모든 資産은 會長이 이를 管理한다.

第30條 (特別會計) 必要한 경우에는 理事會의 決議를 거쳐 特別會計를 설치할 수 있다.

第31條 (會計年度) 本會의 會計年度는 每年 4月 1일부터 翌年 3月 31일까지로 한다.

第6章 支部 및 地方理事

第32條 (支部의 構成) ①支部는 該當 市道 및 外國에 設置할 수 있다.

②支部構成은 該當地域에 居住하는 正會員 10名 이상으로 한다.

第33條 (支部任員) 支部에는 다음과 같은 任員을 둔다.

- 一. 支部長 1名
- 二. 支部評議員 若干名
- 三. 支部幹事 1名
- 四. 支部監事 1名

第34條 (支部任員의 選出) 支部의 任員은 支部規約에 따라 選出하고 支部長 및 支部幹事は 支部의 推薦을 거쳐 會長이 이를 認准한다.

第35條 ①(支部長의 義務) 支部長은 每年 3월에 任員名單 會員名單 前年度의 會務報告書의 監事報告를 本會會長에게 書面으로 提出하여야 한다.

②(支部의 義務) 會員의 移動이 있을 때는 즉시 本會 事務局에 報告하여야

한다.

第36條 (支部의義務) 支部는 本會의 總會 및 理事會의 議決을 이행할 義務를 갖는다.

第37條 (支部規約) 支部規約은 支部가 作成하되 本會理事會에서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38條 (支部運營) 支部에 所屬하는 通常資産의 4분의3은 支部運營에 充當한다

第39條 (支部總會의 參席) 支部總會時에는 本部에서 理事 1人 이상을 派遣하여 參席키로 한다.

第40條 (地方理事) ①支部가 設置되지 않은 地域의 會員을 위하여 그 地域에 地方理事를 둘 수 있다.

②地方理事는 그 地域住在 正會員中에서 理事會의 決議를 거쳐 會長이 任命한다. 地方理事의 任期는 本會 任員과 같다.

③地方理事는 毎年 3월에 所屬會員 名單을 本會事務局에 報告하여야 하고 會員의 移動이 있을 때는 즉시 이를 報告하여야 한다.

第41條 (支部長 地方理事의 權利) 支部長 및 地方理事는 本會 理事會에 出席하여 意見を 陳述할 수 있다.

第7章 定款變更과 解散

第42條 (定款變更) 本會定款中 第20條 第4號 總會에서 出席 正會員의 2/3以上の 同意를 얻어야 한다.

第43條 (解散) 本會가 解散코저 할때는 總會에서 出席正會員의 3/4以上の 同意를 얻어 登錄撤回에 따른 主務管廳의 節次를 밟아야 한다.

第44條 (資産의 處理) 本會가 解散할 때의 殘餘資産은 總會의 議決에 의하여 處理한다.

附 則

1. 本會 定款은 未詳한 곳은 理事會의 決議로 規程을 정한다.
2. 第20條의 4, 5號는 主務長官의 許可를 얻어야 한다.
3. 舊定款下의 登錄된 會員 및 選出된 任員은 本定款이 發效되는 날 本定款下에 登錄된 會員 및 選出된 任員으로 본다.
4. 本 定款은 1971年 4月 17일부터 效力을 發生한다.

附 則

本 定款은 主務部長官에게 許可를 받은 1974年 6月 12일부터 效力을 發生한다.